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및 행위제한(업무취급)」 제도 안내

2019. 5.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및 행위제한(업무취급)」 제도 안내

1. 취업심사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 인사혁신처 고시 **취업제한기관(비영리,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 재산등록 의무자에서 퇴직한 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제한
 - 취업제한기관과 퇴직 전 5년동안 소속부서 간 업무연관성 없음 : 「취업제한여부 확인」
 - 취업제한기관과 퇴직 전 5년동안 소속부서 간 업무연관성 있음 : 「취업승인」

2. 행위제한 「업무취급」 승인

- 대상 : 모든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재직할 전체 기간에** 본인이 직접 처리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업무관련성 범위에 있는 업무를 **퇴직 후 기간 제한 없이 취급 금지**
- ※ 인사혁신처 고시 취업제한기관에 한정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이 있는 모든 기관이 해당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 업무관련성(또는,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 판단 근거

- 관련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호
- 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 공사, 용역, 감독, 물품구입, 재산상 이익 등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호**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8.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I. 취업심사(취업제한여부 확인, 취업승인) 및 업무취급 안내

□ 취업제한여부 확인

- 취업제한대상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 취업제한기간 : 퇴직일로부터 3년
- 주요내용
 -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호)이 없는 경우 신청
 - 재산등록 의무 면제자의 경우 최초 의무 면제일로부터 3년간 취업제한
- 취업승인 심사 기준
 - 소속부서 또는 기관과 취업제한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를 심사
- 취업승인 절차
 - 퇴직 당시 소속기관·단체의 장을 거쳐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 완료 후 취업 가능

□ 취업승인

- 취업제한대상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 취업제한기간 : 퇴직일로부터 3년
- 주요내용
 -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호)이 있는 경우 신청
 - 재산등록 의무 면제자의 경우 최초 의무 면제일로부터 3년간 취업제한
- 취업승인 심사 기준
 - 소속부서 또는 기관과 취업제한기관 간의 업무관련성,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특별한 사유 인정 여부 등을 종합심사
 - 특별한 사유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각호
- 취업승인 절차
 - 퇴직 당시 소속기관·단체의 장을 거쳐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취업승인 요청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 완료 후 취업 가능

□ 행위제한 「업무취급」

-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9조
- 대 상 자 : 퇴직한 모든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및 직원 등
- 대상기관 : 인사혁신처 고시 취업제한기관과 상관없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호”와 관련이 있는 모든 기관
- 내 용 : **본인이 재직기간 동안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는 퇴직 후 취급 금지**
- 업무취급 승인(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 조건
 - 국가안보, 공공의 이익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 할 것
 - 업무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 될 것
- 업무범위 : 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업무를 직제·정관·규정 등에 따라 공식적으로 수행한 경우

※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이 인사혁신처 고시 취업제한기관일 경우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 및 「업무취급」을 병행하여 심사 신청하여야 함.

- 공직자윤리법상 위반내용별 제재 -

위 반 내 용	제 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29조제1호)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30조제3항제2호) 	1천만원 이하 과태료

II. <취업제한여부 확인>과 <취업승인> 비교

	취업제한여부 확인	취업승인 ※ 취업승인 신청 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개념	퇴직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 제한기관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조사·판단하여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	퇴직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제한 기관 간에 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이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취업을 승인하는 것
심사 기준	소속부서와 취업제한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 여부를 심사	소속부서와 취업제한기관 간의 업무관련성,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취업 승인할 특별한 사유 여부 등을 종합 심사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②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③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④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⑤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⑥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⑦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⑧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제한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산업 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 제한기관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⑥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⑦ 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⑧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⑨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III. 취업사실 신고, 업무내역서 제출, 2+2 업무취급 금지

□ 대상자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 「공직자윤리법」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자
 - 자치단체장, 행정·정무부시장, 경제자유구역청장, 국제관계대사, **市·군·구의원** 등
- 2급 (상당)*이상 공무원, 소방감 이상 소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장 및 임원** 등
 - *2급(상당) : 고위공무원단, 일반직, 별정직, 연구관, 지도관, 임기제 등 상당하는 직위

□ 취업사실 신고

- 적용시기 : 2015.3.31일 이후 퇴직공직자부터 적용
- 내 용
 - 취업이력공시 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10년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실**을 매년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업사실을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
- 제출서식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

□ 업무내역서 제출 및 2+2 업무취급 금지

- 관련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3, 제30조 및 시행령 제35조의3
- **업무내역서** : 취업심사결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이 가능하다고 결정되어 취업한자의 경우 퇴직 후 2년간 1년경과 후부터 1개월 이내 매년(2년간 연1회씩 2번)
 - ☞ **퇴직 전 소속 부서(1차 확인) 및 기관(2차확인)에서는 2+2 업무취급 금지 위반여부를 조회·확인하여 법 18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 과태료 통보(법 제30조제1항)**
- **2+2 업무취급 금지** : 퇴직 후 2년 동안 퇴직 2년전 근무기관에서 처리한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는 취업한 사기업체(취업제한기관) 등에 대해 처리하는 일정업무 취급 금지
- 제출서식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4], [별지 제20호의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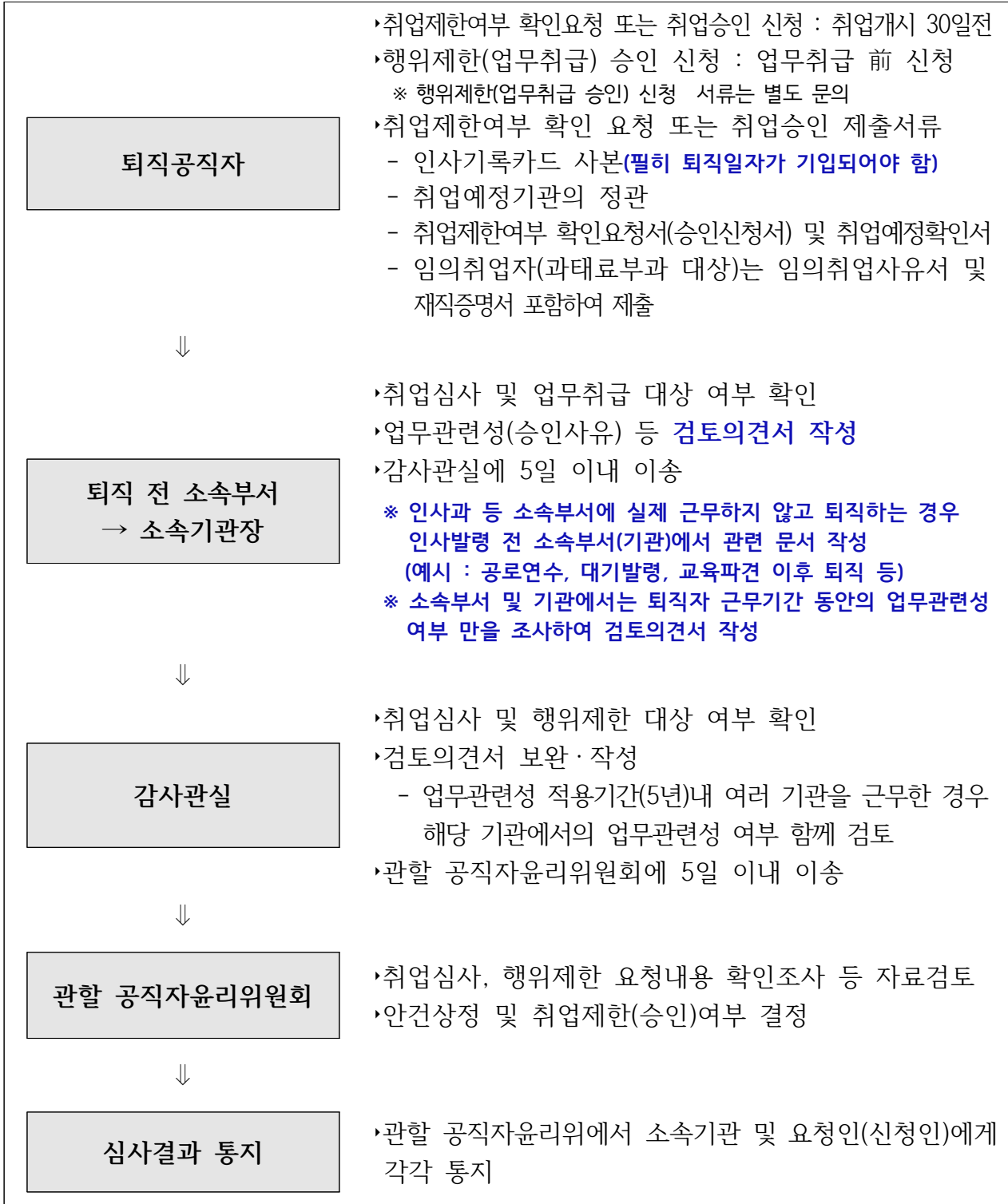
※ 「취업이력 신고 및 업무내역서 제출」 일정표 예시

퇴직일	취업심사일	취업일	취업이력 공시신고	비고
2018.8.10.	2019.5.27.	2019.6.29.	2019.6.29~7.28	취업 후 1개월이내 신고

업무내역서(1년차)		업무내역서(2년차)	
업무내역서 작성기간	제출마감일	업무내역서 작성기간	제출마감일
2019.6.29.(취업일) ~ 8.9.	2019.9.9.일까지 제출	2019.8.10. ~ 2020.8.9.	2020.9.9.일까지 제출

IV. 취업 및 업무취급 심사 절차

- ✓ 퇴직공무원 재취업심사 프로그램 안내
 - 프로그램명 : 퇴직공무원 재취업심사 자가진단 서비스
 - 서비스 장소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사이트(<http://www.peti.go.kr>) → 취업제한, 행위제한
 - 서비스 내용 : 퇴직공무원 재취업 가능여부 자가진단 및 취업제한기관 안내 등



V. 우리시 공직유관단체 현황

- ※ 우리시 취업제한 공직유관단체 : 인천교통공사, 인천시설관리공단, 인천의료원
- ※ 군.구의 경우 시설관리공단, 안전관리공단, 도시관리공단은 취업제한기관
- ※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하는 취업제한기관**이 “협회”에 가입할 경우 “협회” 또한 취업제한기관에 해당 → (예시) 인천상공회의소 등

기관명	지방공사/공단 (영제3조의2①2호, 법제3조의2①4호)	임원선임 (영제3조의2①1호, 법제3조의2①5호)	재정지원 (영제3조의2①3호)	업무위탁 (영제3조의2①4호)	재출자/재출연 (영제3조의2①5호)
58 (공개 7)	13 (공개 3)	37 (공개 3)	6 (공개 1)	1	1
인천광역시 (21)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재)인천문화재단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의료원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인천신용보증재단 (재)인천발전연구원 (재)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인천스마트시티(주) 인천장애인체육회 인천광역시자활센터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 (사)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인천투자펀드		(주)송도아메리칸타운
중 구(4)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 인천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		인천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동 구(4)		인천동구자원봉사센터 인천동구지역자활센터 인천광역시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재)동구꿈드림장학회		
남 구(3)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남구자원봉사센터 남구노인인력개발센터			
연수구(6)	인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연수구자원봉사센터 청학노인문화센터 (재)연수큰재장학재단 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	연수구노인복지관		
남동구(6)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남동구자원봉사센터 만월종합사회복지관 논현종합사회복지관 노인인력개발센터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부평구(4)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인천광역시부평구자원봉사센터 인천광역시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			
계양구(3)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계양구자원봉사센터 인천계양지역자활센터			
서 구(4)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서구자원봉사센터 서구노인인력개발센터 (재)인천광역시서구문화재단			
강화군(2)	인천광역시강화군시설관리공단	강화군자원봉사센터			
옹진군(1)			(재)옹진군인재육성재단		

VI. 2019년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예정일

※ 취업심사는 퇴직 전 소속부서를 거쳐 「취업심사 자료 제출 마감일」 까지 문서로
市 감사관실에 접수되어야 다음달 개최되는 위원회 상정 가능
 → 「취업심사 자료 제출 마감일」 이후 도착한 문서는 개최 예정일 다음 달 위원회 상정
 (2019.1.24(목) 문서 접수 시 → 3.20(수) 개최 예정인 위원회 상정)

※ **군·구에서는 취업심사 또는 업무취급 승인 신청 시 취업심사대상자의 명확한 업무관련성 여부 파악 및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일부 기관에서 명확한 증빙자료 없이 신청하는 사례가 있어(업무관련성 여부를 다시 파악하여야하는 절차 재이행 필요) 자료가 미흡할 경우 반려 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예정일은 내부사정에 의거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월	취업심사 자료 제출 마감일	개최 예정일	비 고
2018.12월	2018.11.21.(수)	12.19(수)	
2019. 1월	2018.12.26.(수)	1.23(수)	
2월	2019. 1.23.(수)	2.20(수)	
3월	2.20(수)	3.20(수)	
4월	3.27(수)	4.24(수)	
5월	4.24(수)	5.22(수)	
6월	5.22(수)	6.19(수)	
7월	6.26(수)	7.24(수)	
8월	7.24(수)	8.21(수)	
9월	8.28(수)	9.25(수)	
10월	9.25(수)	10.23(수)	
11월	10.23(수)	11.20(수)	
12월	11.20(수)	12.18(수)	